

무배당 Top3 VIP 상해보험
사업방법서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Top3 VIP 상해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0년 5월 18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op3 VIP 상해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종류
무배당① Top3 VIP 상해보험	종합보장형
	재해사망보장형
	단기형

-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 다만, 판매채널이 금융기관대리점의 온라인 채널인 경우 무배당 손안에 VIP 상해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합보장형	5년	2년	20세~67세	20세~66세	월납/연납
		3년	20세~65세	20세~65세	
	7년	2년	20세~69세	20세~68세	
		3년	20세~68세	20세~67세	
		5년	20세~65세	20세~66세	
	10년	2년	20세~70세	20세~70세	
		3년	20세~70세	20세~70세	
		5년	20세~70세	20세~70세	
		7년	20세~70세	20세~70세	
	재해사망 보장형	5년	2년	20세~70세	
3년			20세~70세	20세~70세	
7년		2년	20세~70세	20세~70세	
		3년	20세~70세	20세~70세	
		5년	20세~70세	20세~70세	
10년		2년	20세~70세	20세~70세	
		3년	20세~70세	20세~70세	
		5년	20세~70세	20세~70세	
		7년	20세~70세	20세~70세	
단기형		3년	2년	20세~56세	20세~70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한다.
- (2)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이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가) 보험청약서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가 추가된 경우
 - (나) 보험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다) 보험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3)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2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한다.
- (4) 직업 및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
위험등급	(A 급)	(B,C 급)	(D,E 급)

나.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5%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